

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6. 4. 3.>

시신·유골

[] 매장

[] 화장

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		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
	주소					
	사망장소	사망사유 사망연월일	. . .		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분묘설치 연월일	. . .			
	화장 후 장사방법	☐ 매장 ☐ 봉안 ☐ 자연장([] 수목장등, [] 시설산분장, [] 해양산분장)		구분	☐ 공설 ☐ 사설	
신고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			전화번호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또는 읍·면·동장의 확인서(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	---

제 호						
시신·유골						
[] 매장 [] 화장 신고증명서						
사망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
	주소			사망사유 사망연월일	. . .	
	매장 또는 화장 장소			분묘설치 연월일		
	화장 후 장사방법	☐ 매장 ☐ 봉안 ☐ 자연장([] 수목장등, [] 시설산분장, [] 해양산분장)		구분	☐ 공설 ☐ 사설	
신고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사망자와의 관계	
	주소				전화번호	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(화장)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	
관인						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